

정 관

(2025. 03. 26. 개정)

키움증권주식회사

(주주총회)

2000년 01월 31일 제 정
2000년 05월 26일 개 정
2002년 05월 31일 개 정
2003년 05월 23일 개 정
2004년 05월 28일 개 정
2005년 05월 27일 개 정
2006년 05월 26일 개 정
2007년 05월 25일 개 정
2008년 05월 30일 개 정
2009년 05월 29일 개 정
2010년 05월 28일 개 정
2011년 05월 27일 개 정
2012년 05월 25일 개 정
2013년 05월 31일 개 정
2014년 03월 14일 개 정
2017년 03월 24일 개 정
2018년 03월 22일 개 정
2019년 03월 26일 개 정
2024년 03월 28일 개 정
2025년 03월 26일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상 호] 이 회사는 키움증권주식회사(이하 “이 회사”라 한다, (약호 : 키움증권))라 하며, 영문으로는 KIWOOM Securities Co., Ltd. (약호 : KIWOOM)로 표기한다.

제2조 [목 적]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자문업

마. 투자일임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가·허가·등록을 받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

4.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이외에 자본시장법 또는 관련법령,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허가를 얻거나 등록·신고·보고 등 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 및 그에 겸영·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03. 28.]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iwoom.com/>)에 공고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하며, 위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천만주로 한다.

제6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제9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그리고 발행할 종류주식의 종류, 수, 존속기간은 발행 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하되, 종류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무기한부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그 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당해 년도의 이익으로써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부족액을 차기 영업년도의 이익으로써 누적적으로 배당하지 않는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제9조의3, 제9조의4의 각 종류주식에도 적용한다.

제9조의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으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회사는 설립 또는 인·허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발행된 종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상환한다.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④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을 부가한 금액 중에서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은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상환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종류주식을 상환기간 중 주주가 청구하는 때에 회사가 상환하는 것으로 하거나 회사가 상환기간 중 이사회의 결의로 상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상환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 시 상환하여야 하는 종류주식의 경우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⑥ 회사는 이 조의 종류주식을 제9조의4에 의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상환을 청구할 경우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경우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주식병합 또는 합병·분할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전환은 주주의 청구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 또는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전략적 제휴 및 선진 금융기법 전수,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8. 05. 30.>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 제542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제3항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에 제2항 각 호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2019. 03. 26.〉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8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사채(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함)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 03. 26.〉

제18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 또는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전략적 제휴 및 선진 금융기법 전수,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상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내외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 또는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전략적 제휴 및 선진 금융기법 전수,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상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배정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내외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50의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21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21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22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23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7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특별히 정하지 않을 시에는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1절 이 사

제35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6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의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원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7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03. 28.>

② 제1항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개정 2024. 03. 28.>

③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단, 이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03. 28.>

제38조 [이사의 직무]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일 직급 이사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순서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9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이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퇴직금 외 급여, 상여 등)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하거나, 그 결의로 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별도의 규정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이를 행하고, 지명한 이사가 없을 시에는 정관 제38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의2 [이사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42조 [이사의 결의방법] ① 이사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이사의 의사록] ① 이사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의 결의로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결의방법, 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

⑤ 위원회에 대하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 표 이 사

제46조 [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로 2인 이하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47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8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⑧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0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51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그 사실을 선정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

제5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6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보 칙

제57조 [준용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② 이 회사는 사업목적 수행 및 내부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규정 및 내규 등을 이사회 결의로써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3년 5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구 정관의 부칙은 이 정관의 시행일자로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4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5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6년 5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7년 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8년 5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자본시장통합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시행시, 본 정관 상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유가증권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등은 그에 따르고, 본 정관상 (유가)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9년 5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0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1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2년 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기 사업년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3년 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8년 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5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이 정관 제41조의2 제2항 규정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